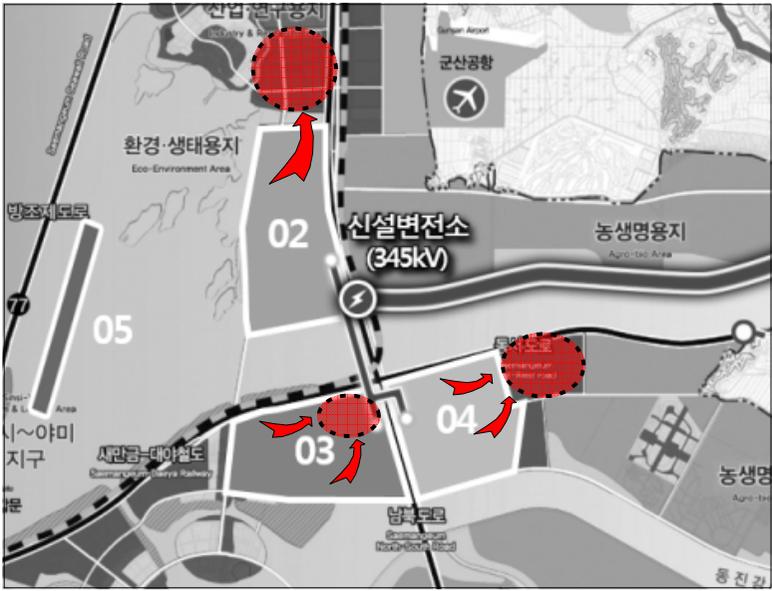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자료요청 및 서면질의에 따른 답변사항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1	<p>○ 제3장 제19조(노출부지 등 처리) 관련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면 현재 수면기준 노출부지현황 레벨이 표시된 관련 도면이 필요합니다. (준설토량 산출시 필요함.) 2. 준설토를 적치하기 위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면 높게 쌓아 올려야 되고, 면적이 넓으면 적정 높이를 쌓아야 합니다.) 	<p>○ 제3차 공모에 세부적인 사항이 제공될 예정이며, 개략적인 준설량은 2구역 980만^m³, 3구역 1,330만^m³, 4구역 619만^m³ 정도임</p> <p>※ 준설량은 개략적인 수심을 토대로 산출된 물량 이므로, 정확한 물량은 해당 사업자가 추후 실시설계 등을 통해 산출하여야 함</p> <p>○ 준설토 적치 위치는 제19조제2항에 명기되었으며, 세부적인 위치와 면적은 인허가, 사업구체화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임</p>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A, B 구역이 노출부지로 너무 육지 쪽으로 근접되어 있기에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 이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어 준설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변경하여야 될 것으로 보임 (준설에 따른 공기, 비용 등이 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역의 변경은 불가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9>제안자 서약서 관련입니다. 새만금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새만금청이 활용할 수 있으며, ○ 채택된 제안서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새만금청에 귀속된다. 라고 되고 있는데, ○ 본 질의인은 거리, 용량 등에 구매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특허공법이 있는데,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허공법이 도입되어도 어떤 대가성이 없이 소유권, 저작권이 새만금청에 귀속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공법 등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사항은 심의하지 않으므로 제안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설명회에 새만금개발청장님께서 발표하신 PPT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자료이므로 비공개임.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현황 참조 가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선로비용, 준설비용, 가토제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비에 대한 명확화 되는 시기(조건 변경시 Donation 금액의 조정 가능성) → 당사의 경우, 상기 비용의 명확화가 사업성의 영향을 많이 미침. Donation 비용 등을 산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기에 명확화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통연계비용(송전선로비용)은 6,600억원을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시설계 중이므로, 아직 미정임 ○ 준설, 가토제(전기실 설치를 위한 매립용지, 내부 가설도로 등) 등 비용은 해당 구역 사업자가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임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규모가 2.1GW, 1.2GW(22.4월)/0.9GW(25년말)인데, 송전선로 비용, 준설비용, 가토제 비용 분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통연계비용은 지침서 제20조에 따라 용량별로 균등 분담하고, 준설비용도 제19조에 따라 구역별로 해당 사업자가 용량별로 부담함 ○ 가토제 비용은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 구역의 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역별 평균 점사용료는 2구역 140원/m², 3구역 342원/m², 4구역 105원/m² 수준임 ※ 해당 금액은 추정가로, 인근 토지가액, 점사용 위치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세부 금액 산출은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출 필요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유동비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대비 투자사업 규모 관련하여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계정 또는 자본총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내 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형식 포함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제3조에 따라 작성하되,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안자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함 ○ 다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성하기를 권고함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11	○ 제안서 접수 이후, 발표용을 위한 문서 수정 가능 여부	○ 지침서 제3조에 따라 제안서는 발표용으로 사용되므로, 제출 이후 수정은 불가함	
12	○ 30페이지 이내가 관련자료 붙임이 포함된 사항인지?	○ 붙임은 포함되지 않은 분량임	
13	○ (지침서 제3조제2항 관련) 발표용, A4 가로형식 이란 프리젠테이션(PPT) 파일 형식인지?	○ 파일 형식은 정한 것이 없으므로, 제안자의 편이에 따라 형식을 정할 수 있음	
14	○ (지침서 제18조제2항 관련) 사업위치 대상지의 정보공개요청이 가능한지? - 최고·최저 수위, 최저수위면적, 수질(염도, 석회질 등)정보, 수중지형에 대한 정보 등	○ 제3자 공모에 세부적인 사항이 제공될 예정임	
15	○ (지침서 제18조제4항 관련) 개발행위진행 및 공사중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해결기간이 지연된 경우 사업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는 부분인지?	○ 지침서 제1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운영 시기를 1단계 '22년 4월, 2단계 '26년 1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될 수 있음	
16	○ 제안서 심의(심의위원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출일자에 따라 심의일자도 빨라지는지요?	○ 제안서가 제출되는 대로 접수마감일과 무관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추진할 예정임	
17	○ 개발투자형의 경우 총투자비 내 세부투자비 및 근거자료 제시의 여부와 범위는?	○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시 지침서 제11조에 따라 심의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안자가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됨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제11조제1항제나호 관련) 개발투자형 심의 기준 중 사업추진의 담보성(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증 등)에 대하여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보증을 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제3자 공모참여 사업자가 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담보성은 향후 시행 예정인 제3자 공모에서 제시될 투자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증 방법을 제안하는 것임 - 금번 실시되는 제안서 접수는 투자사업에 대한 이행보증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님 - 제안서 채택 이후, 제3자 공모에 참여하는 자가 제안서에 포함된 이행보증방법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택', '불채택'으로 구분하여 심의결과를 결정하여 제안 내용이 '채택'된 경우, 해당 '제안'내용의 제3자 공모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3자 공모를 추진하는 것인지, ○ '제안'한 내용 중 일부만 발체하여 제3자 공모를 진행 할 수도 있는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서를 토대로 제3자 공모를 추진하되, 공개범위는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자와 협의하여 우리청이 결정하여 공개할 예정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에 대한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언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은 투자사업의 인센티브이므로, 본 제안서 접수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발전사업권을 부여함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21	<p>○ 채택된 제안자의 지위는 무엇인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우선협상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상식인바, - 현재의 공모는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제3자 공모 평가 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채택된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 단순히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 않고 많은 조건을 부가하여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귀청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제3자 공모는 최초 제안서가 주무관청에 접수되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3자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3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 현재 우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안서 접수는 제3자 공모가 아닌, 다양한 사업 컨셉을 접수받아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제3자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임 ○ 아울러, 지침서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3자 공모시 제안서의 공개범위를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자와 협의토록 하였고, 제3자 공모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채택된 제안서의 제안자를 선순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 우리청은 채택된 제안자가 제3자 공모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함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시 메이저 회사를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메이저 회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심의 시 메이저 회사(대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인가요? ○ 아니면, 자산총계가 많은 회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인가요? ○ 그렇다면 그 자산총액별 심사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제16조에 따라 투자사업의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을 심의할 예정이며, ○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점수화하여 평가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가산점, 항목별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님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시 제안서 마감 전 먼저 제안서를 제출하면 먼저 선정을 하고, 제3자 공모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유리한 것인가요? - 예시로 A컨소시엄이 A사업구역(위치)에 제안을 해서 먼저 채택이 되면 B컨소시엄이 동일한 A사업구역(위치)에 공모마감일에 제안을 한다면 B컨소시엄은 채택이 안되는 것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가 맞음 - 제안서가 제출되는 대로 접수마감일과 무관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먼저 제출된 제안서가 심의로 채택될 경우, 중복된 내용의 후순위 제안서는 채택하지 않을 예정임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대표사가 자산총계가 제일 많은 회사가 해야 되나? 자산총계와 상관없이 컨소시엄 참여사 중 선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제11조에 따라 제안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재무구조, 경영상태 분야의 심의는 자산총계가 제일 많은 회사와 차순위 회사의 자료를 심의함 ○ 따라서, 자산총계와 상관없이 컨소시엄 참여사에서 대표사를 선정하면 됨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25	<p>○ (지침서 제12조 관련) 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서를 토대로 제3자 공모를 추진하며, 공개범위는 사업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공개범위의 내용은?</p> <p>EX) 채택된 제안서가 제안면적 10만평, A컨셉(3만평), B컨셉(3만평), C컨셉(4만평)으로 제안되었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면적은 확정하고 컨셉 중 중요사항만 제안자와 협의하여 공개하는지? - 컨셉별로 면적 및 컨셉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개별 제3자 공모를 추진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택된 제안서의 공개범위(중요사항 또는 세부적인 사항 등)는 사업특성에 따라 제안자와 협의하여 우리청이 결정할 예정이고, ○ 제안서의 내용은 지침서 제6조에 따라 보완사항 외에는 수정 또는 조정하지 않음 ○ 따라서, 채택된 제안내용의 면적 및 컨셉을 나누거나, 세분화해서 우리청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제3자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 채택된 제안서의 공개범위를 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뒤, 공개부분을 내용으로 제3자 공모를 시행하는 것임 	
26	<p>○ 제안서 제출 시 컨소시엄 대표사가 차후 진행되는 제3자 공모의 주관사와 동일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므로 제안자의 판단으로 진행해도 됨 ○ 다만, 지침서 제13조에 따라 추후 시행될 제3자 공모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채택된 제안서의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지정 받기 때문에 본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동일하여야 함 	
27	<p>○ 제출 서식 중 위임장,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사 선임서 제출을 동일한 내용으로 컨소시엄 회사들이 각각 날인한 여러 페이지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침에 들어있는 서식처럼 1개의 페이지에 꼭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날인하여 여러 페이지를 제출해도 무방함.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28	○ 심사항목의 심사비중이 나와 있지 않는데 심사항목의 심사비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점수화하여 평가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가산점, 항목별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님	
29	○ 재무구조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구조를 작성해야 하는지 개별재무구조만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요?	○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30	○ 투자업체가 외국회사일 경우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 제안자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안자가 외국회사일 경우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됨	
31	○ 사업 추진의 담보성(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증 등) 관련 외국 업체일 경우 새만금청에서 요구하거나 선호하는 보증 방식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ank Guarantee나 보증보험사의 이행 보증증권 등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추진의 담보성은 향후 시행 예정인 제3자 공모에서 제시될 투자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증 방법을 제안하는 것임 - 금번 실시되는 제안서 접수는 투자사업에 대한 이행보증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님 - 제안서 채택 이후, 제3자 공모에 참여하는 자가 제안서에 포함된 이행보증방법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32	○ 제안서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시 표지, 목차, 간지 포함여부 문의합니다	○ 제안서의 페이지는 표지, 목차, 간지, 붙임자료 등을 제외한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는 페이지 수량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면 됨	

연번	자료요청 및 질의내용	답변사항	비고
33	○ 제안서 작성시 칼라 사용여부 및 제본방법을 문의합니다.	○ 칼라 사용여부 및 제본방법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제안자의 편이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함.	
34	○ 재무구조 작성 시, 각종 재무 수치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는지요?	○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35	○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는 감사보고서 등으로 같음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원본 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무관한지요?	○ 무관함.	
36	○ 자본금 대비 투자사업비 표에서, “자본총계(E)”는 <서식3>의 재무구조 평가대상 자산순위 1위 및 2위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의 합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 자산총계가 제일 많은 회사와 차순위 회사의 현황을 각각 따로 1부씩 작성함	
37	○ 지침서에 포함된 <서식>hwp파일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청 홈페이지(입찰공고란)에 공개되어 있음	
38	○ 지침서 제20조(계통연계) ②항 계통연계 정산 비용은 발전용량에 따라 균등 분담하여야한다. 고 되어 있는바 제안서 사업자의 수지분석을 위해 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대략금액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통연계 비용은 6,600억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39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개최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투자설명회시 배포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공개하겠음	자료 공개